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09.09(금) 평창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 회부일자 : 2016. 09. 20(화)
- 상정일자 : 2016. 09. 20(화) 제22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2016. 3.31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서비스의 혜택을 통합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류지웅)

-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실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서비스의 혜택을 통합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2년 전부터”를 “2년 전부터 계속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며, 「개인 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5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중 “별지 제3호”를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과”로, “신청대장과 지급대장”을 “지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
|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br>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br>*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br>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br>※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br>※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br>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
|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안 |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
| 내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소관기관)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센터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